

【서식1】

‘★’ 표 란은 공단 접수자가 기재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신청서

신청동		이용 시간 (‘0’ 표)	전일	주간	야간
주차면 번호					

신청차량 (자동차등록증 기준) (필수항목)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가점· 요금할인 동의 필수동의	장애인·유공자	
	차명		차량 배기량	CC		경차·저공해	
						다동이 카드	
						공유사업	

신청인 (필수항목)	성명	관계: 신청차량 소유자의()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행정동 전입일(거주자)			
	주소 (주민등록상)				신청인이 기재	접수자 확인	
	우편송달 주소	※ 우편 송달 가능토록 주택(건물) 층, 동-호수(실번호)까지 자세히 기재					
	연락처	휴대폰		주택		사무실 (사업장)	

필수 제출서류 (공통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등록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 발급) ※ 비거주자는 사업자등록증(재직자는 재직증명서 추가)	
가점·주차요금 할인 대상자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	다음 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터넷 신청자 제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국가 유공자 <input type="checkbox"/>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input type="checkbox"/> 저공해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다동이 카드 소지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신청차량 소유자와 신청인이 동일(고유식별번호)한 경우	
차 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직계가족, 형제자매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 ※ 신청내용(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변경 시 반드시 공단에 통보
- ※ 증빙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가린 후 제출(예시 123456-*****)

위 신청인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기준 및 조건」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신청서의 허위(착오)기재, 신청
관련 서류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배정 전후를 불문하고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취하는 배
정 취소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본인 성명

(서명·도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접수일 (신청일)	★	접수자 (서류확인자)	★	처리결과	★
--------------	---	----------------	---	------	---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기준 및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뒷장 참조)

공단은 신청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지 않고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본인확인, 거주 확인용도 등으로만 사용되며 서류에 기재된 고유식별정보는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보호합니다.
(공단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홈페이지 www.y-sisul.or.kr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 및 조건

1. 신청대상

- 가. 당해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 나. 당해 지역 내 거주하고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주민
- 다. 당해 지역 내에 근무처 및 사업장이 있어 빈 주차공간을 이용(확보)하고자 신청한 자

2. 배정우선순위 산정기준(우선순위별 고득점 순으로 배정)

- 가. 1순위: 배정일 현재 지역 내 거주자(주민등록 등재 必) 중에서 심한장애인과 보행상장애인(장애인주차가능표지 보유), 국가유공자(본인 명의차량 및 주차가능표지 보유)를 대상으로 상위점수(해당차량 합계점수) 순위에 의거하여 배정
- 나. 2순위: 배정일 현재 지역 내 거주자(주민등록 등재 必) 중에서 상위점수(해당차량 합계점수) 순위에 의거하여 배정
- 다. 3순위: 배정일 현재 지역 내 직장에 출퇴근하는 상근자 중 심한장애인과 보행상장애인(장애인주차가능표지 보유) 및 국가유공자(본인명의 차량 및 주차가능표지 보유)를 대상으로 상위점수(해당차량 합계점수) 순위에 의거하여 배정
- 라. 4순위: 배정일 현재 지역 내 직장에 출퇴근하는 상근자 중에서 상위점수(해당차량 합계점수) 순위에 의거하여 배정
 - ※ 상근자는 본인이 심한장애인, 보행상장애인, 국가유공자이면서 본인 소유차량인 경우만 우선순위 및 할인 적용 됨

3. 배정점수표

거리	점수	주거년수	점수	배기량	점수	가산점	
10m이하	50점	10년이상	30점	1000cc이하	20점	심한장애인	100점
30m이하	40점	9년이상	27점	1500cc이하	18점	보행상장애인	
50m이하	30점	8년이상	24점	1800cc이하	15점	국가유공자	
70m이하	20점	7년이상	21점	2000cc이하	10점	다동이 (2인이상)	5점
100m이하	10점	6년이상	18점	3000cc이하	5점		
100m초과	5점	5년이상	15점	3000cc초과	2점	배출가스 1등급차량	5점
-	-	4년이상	12점	-	-		
-	-	3년이상	9점	-	-		
-	-	2년이상	6점	-	-		
-	-	1년이상	3점	-	-		

※ 동점일 경우 기배정자, 거리, 주거년수, 배기량 항목의 점수순으로 배정

가. **배정방법** : 신청 자동차(자동차등록증) 및 거주 정보(주민등록 기준)를 기초로 '배정점수표'상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배정

나. **배정대상** : 정기 신청기간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기 배정

※ 정기 배정 이후에는 여유분 발생 시 수시 배정

4. 배정제외대상자

- 가. 불법주차위반과태료 3회 이상 미납
- 나. 관련 법령상 차고지(주차장) 확보 의무가 있는 사업용 차량
- 다. 건축을 내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용도로 임의 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의무확보면수를 초과 한 세입자의 경우는 제외)
- 라. 중기,건설기계,2.5톤 이상의 화물차량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 등
- 마. 노점상 차량(화물 2.5t 미만)은 배정금지

5. 허가조건

- 가. 주차구획을 배정 받은 자는 지정차량·지정시간·지정구획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단속에 대한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있음
- 나. 허가구획선 내에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배정받은 주차구획은 배정자가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 다. 차량출입구 신설, 건축공사, 운영방법 변경 등으로 이용불가 사유가 발생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처리
- 마. 폭우·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주차면 관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바. 주차구획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임의 양도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 주차면은 주차용도 외 사용 시 취소될 수 있음(상행위·물품적치 등)
- 아. 주차요금 납부 후 이용이 가능하며, 미납 시 배정취소되며, 단속 및 부정주차요금이 부과 됨
- 자. 지정차량 변경 시 반드시 현장근무자에게 알리고 공단에 변경 신청 또는 연락을 하신 후 이용해야하며, 위반 시 단속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차. 배정받은 주차면이 비어 있을 시 그 면은 배정자의 주차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주차권 발급이 될 수 있음

6. 배정(지정) 원칙

- 가. 주차구획은 구간제(구간 공동 이용제)로 배정하며 이용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며, 주차요금은 이용기간 요금을 선납해야 함
- 나. 주차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배정 취소하고 주차구획은 후순위(또는 대기자)에게 배정함
 - ※ 주차요금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별도 예고 없이 배정 취소됨.
- 다. 거주자인 신청자가 직계 존비속(부부포함) 또는 형제자매의 소유 자동차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에 신청하면 거주자로 간주함(단,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 시에 한함)
- 라.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된 자동차로 거주지 등에 신청하면 재직 증명서 등으로 사실 관계 확인 후 거주자로 간주함
- 마. 개인운송사업자 자동차(2.5톤 미만의 개인용달 및 화물)가 거주자 소유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함
- 바. 공사 등으로 주차구획이 없어지거나 기타 사유로 이용 불가 시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순으로 배정 중지하거나 취소함.(단, 타구간 여유분 발생으로 수시 배정 시 우선 배정 가능)
 - ①배정 후순위자 중 저득점자 ②거리 ③주거년수 ④배기량 ⑤해당 주차구획의 배정일이 늦은자
- 사. 중도 이용 중지 시에는 환불신청 기준일로부터 일괄계산하여 환불함
- 아. 주차구획은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자. 배정은 거주자 1가구 1차량(1대), 상근자 1인 1차량(1대) 배정을 원칙으로 함
- 차. 법률 혹은 조례 개정 시 할인을 적용 및 폐지에 대해 할인을 적용 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배정마감일까지의 할인 요금을 적용함

7. 배정 취소 요건(공단 직권 취소)

- 가. 배정 후 주차요금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 나. 주차구획 이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 다. 신청서 허위(착오) 기재, 신청 관련 서류의 허위 등이 발견된 경우
 - ※ 이 경우 배정 전·후를 불문하고 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라. 공사 등으로 주차구획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없어지는 경우
- 마. 그 밖에 이용자가 허가조건, 배정(지정) 원칙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의 주차장 사용 조건(유의 사항)

- 가.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 훼손 및 도난은 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며, 거주자우선주차 수탁관리자인 공단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나. 정당한 배정 차량, 이용기간, 지정 이용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주차구간이나 지정 이용 시간 이외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됨
- 다. 신청 내용과 결과는 신청인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이용자)의 책임임
- 라. 배정 여부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 마. 영등포구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 신청한 자나 배정 받은 자는 모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바. 주차장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
- 사. 그 밖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없거나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는 사항은 공단의 해석을 우선함
- 아.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확인 전에 납부한 주차요금의 감면은 소급적용 불가함
- 자. 배정은 6개월 순환배정이며, 기존 이용자도 차기 배정 시 탈락될 수 있음(영구배정, 자동배정 아님)
- 차. 기존 이용자도 정보변경(주소, 차량, 할인 등) 시 이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며, 양식(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변경 시 공단이 위 양식 제출을 요구하면 고객은 적극 협조해야 함
- 카. 부정주차 차량 단속은 09시부터 익일 01시까지임
- 타. 이용시간

구분	전 일	주 간	야 간
시간	24시간	09시 ~ 19시	19시 ~ 익일 09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02-2650-1473,1474,1475 / FAX: 070-4275-548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약관(필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 본 약관에 따라 이용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제공기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받는기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제공목적: 주차장 신청 및 감면 자격 확인
 확인서류: 회원의 주차장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국가공공자 증명원·장애인 증명서·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등을 말한다.
 ※ 위의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회원은 영등포 주차장 신청·이용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선택)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며,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① 수집 및 이용 목적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요금할인 및 배정 가점 적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장애인 여부, 다둥이 및 관련 정보
- ③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신청서에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의 달성(최종 사용 취소 이후 3년) 시까지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이용자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
-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의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는 요금할인 및 배정 가점 적용에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요금할인 및 배정 가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필수)

-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귀하께서 제출한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신청서’는 서비스 이용 및 고객관리, 민원 신청 및 처리, 공지사항 전달, 게시물 등록, 자료 다운로드 등에 이용되며, 향후 신청서의 관리책임은 공단에 있습니다.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우편송달주소 포함), 연락처(휴대폰, 집·사무실 전화), 차량번호, 차량소유자명
·(선택항목) 요금할인 및 가점 사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장애인 여부, 다둥이 및 관련 정보(할인 수혜 적용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로, 원치 않는 경우 제공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이 경우 우대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제3자 제공 이용 동의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업무(과태료 및 체납 조화,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차량 등록 여부)를 위해 제3자(영등포구)에게 개인정보(성명, 차량번호) 제공
-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신청서에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의 달성(최종 사용 취소 이후 3년) 시까지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이용자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
-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신청자는 아래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는 고객관리 전형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공단이 해당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고객관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신청 및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용자의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아래에 제시되는 모든 동의 사항에 해당합니다.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심사에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배정심사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본인 성명 (서명·도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귀중